

의안번호	2204971
의 퇴 인	신정훈 의원
회 답 일	2025. 1. 24.
추계번호	24A455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조제13호 신설 (정의)	개별가맹점이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함 가. 시장등의 상인 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인구감소지역</u> (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 <u>내에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u>	의무규정
2	안 제15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 및 <u>인구 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u> 를 위하여 온누리상품권(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포함)을 발행할 수 있음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등 근거 규정
1	안 제2조제13호 신설 (정의)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5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상권 활성화 지원)	
3	안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개별가맹점¹⁾”의 범위를 농·수산업 관계법률에 따른 “생산자 단체²⁾”로 확대하고(안 제2조제13호),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지역³⁾ 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5조의2), ③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적으로 “인구감소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추가하는 내용(안 제26조의2)

*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1)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여 거래가 가능한 점포를 의미하며, 현행법상으로는 제2조제13호 가목에 따라 시장등의 상인만 이에 해당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가맹점”이란 제26조의4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하는 시장등의 상인(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한다)

나.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제26조의3제2항 단서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대행(代行)하는 상인조직(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한다)

2) 아래 법률에 따른 단체로서,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이에 해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생산자단체”란 수산업의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1년 10월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89개 시·군·구를 말함(5년 주기로 지정)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안 제2조제13호)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따른 수수료와 할인판매에 따른 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확대되면 거래량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 및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국가의 재정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⁴⁾
 - (안 제26조의2)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제활성화 목적으로도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장려하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경우 온누리상품권의 발행량 및 판매량이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안 제1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생산자단체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 지출이 증가할 수 있음
- 개정안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량 증가분에 단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추계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하므로 소요 비용을 산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안 제2조제13호 및 제26조의2)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은 정부의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판매액이 수요 증가분만큼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종류별(지류·디지털) 상품권 판매 증가량에 발행·운영수수료를 및 할인보전율(판매단가)을 곱하여 추계할 수 있으나, 사용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분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므로 상품권 판매 증가량을 합리적으로 가정할 수 없음
 - (안 제15조의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산자단체 사업장 설치·운영 지원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분의 경우 그 지원 사항이 포괄적·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추계 대상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려우므로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4) 온누리상품권 발행 지원은 재량지출성 사업으로 수요 증가가 반드시 사업 예산 증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나, 비용추계의 일반적인 전제에 따라 여기에서는 개별가맹점 및 수요 증가에 수반하여 예산이 확대될 것임을 전제로 추가재정소요 여부를 검토함

-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개별가맹점의 범위에 농·수산업 관계 법률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추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 내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로,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현황과 인구감소지역 회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24년 한 해 동안(1.1~12.31) 예산(발행목표) 5조원 중 4조 2,880억원이 발행되었으며, 2023년 말까지의 누적 미판매액과 2024년 신규 발행액을 합한 금액 4조 9,950억원 중 4조 3,092억원(86.3%)이 판매되었음
 - * [참고자료 2]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
 - 2023년 말까지의 누적 미회수액과 2024년 신규 판매액을 합한 금액 4조 9,129억원 중 2024년 한 해 동안(1.1~12.31) 3조 9,692억원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서 회수된 금액은 3,605억 3,000만원(9.1%)임
 - * [참고자료 3] 인구감소지역 온누리상품권 회수 현황
 -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한 “개별가맹점”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총 19만 8,901개로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개별가맹점은 2만 5,522개(12.8%)이며, 매출액에 관한 자료는 확인이 불가능함
 - * [참고자료 4] 인구감소지역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현황
 - 중소벤처기업부의 2025년 예산 산출 근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종류별 발행·운영 수수료율은 지류형의 경우 2.8%,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0.58%이며, 할인보전율은 지류형의 경우 0(비할인판매) 또는 5%, 디지털(카드형·모바일형)의 경우 5% 또는 10%임
 - * [참고자료 5]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산출 근거
- 현행 농·수산업 관계법률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운영 현황을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⁵⁾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5) 시행령의 내용은 각주 2번 참고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조합(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의 경우 직매장(점포) 운영 여부와 매출액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없음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산림조합은 총 142개로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40개 조합에서 41개 점포를 운영 중이며, 해당 점포의 매출액은 총 368.4억원임
* [참고자료 6] 산림청 소관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
-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은 총 15개로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조합은 11개소이며, 해당 조합의 매출액은 총 20.3억원임
* [참고자료 7] 기획재정부 소관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
-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전문생산자 조직의 경우 인구감소지역 내 ①영농조합법인 3,131개소, ②농업회사법인 1,211개소, ③조합공동사업법인 71개소, ④사회적협동조합 7개소 등이 소재함. 다만, 해당 법인 및 조합에서 매출액(출하액)이 발생한 것은 확인되나, 점포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참고자료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운영 현황을 동법 시행령 제4조 각 호⁶⁾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시행령 제4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의 직매장은 총 26개이며, 이 중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직매장은 총 9개로 해당 직매장의 매출액은 총 121.3억원임
 -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전문생산자 조직에는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등이 포함되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각 법인의 자본금 수준을 알 수 없으므로 생산자단체에 해당하는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현황만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음. 참고로, 인구감소지역 내 ①영어조합법인은 515개소, ②어업회사법인은 213개소 등이 소재하며, 각 법인이 점포를 보유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 [참고자료 9] 해양수산부 소관 생산자단체 관련 운영 현황

6) 시행령의 내용은 각주 2번 참고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김효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효진	02-6788-4654	hjkim1991@na.go.kr

[참고자료 1]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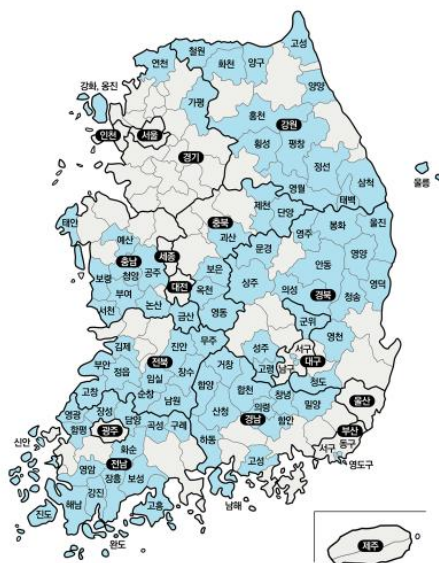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021년 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 인구감소지역 지정 개요

- (법적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지정절차) 인구감소지역 지정안 마련(행안부) → 관계기관 협의(중앙행정기관, 시·도지사 등) → 지방시대위원회 심의 → 지정·고시(행안부 장관)
- (지정현황) 89개 시·군·구
- (지정주기) 5년 단위 지정(21.10월 최초 지정)

▶ 인구감소지역 지정 결과(89개)



부산(3)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3)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2)	강화군 옹진군
경기(2)	가평군 연천군
강원(12)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9)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5)	고령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s://www.mois.go.kr/frt/sub/a06/b06/populationDecline/screen.do>)

[참고자료 2]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판매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발행액	누적 발행액 (A)	판매액	누적 판매액 (B)	누적 미판매액 (A-B)	회수액	누적 회수액 (C)	누적 미회수액 (B-C)
2018	15,016	64,197	14,916	60,610	3,587	14,704	58,518	2,092
2019	20,074	84,271	16,853	77,463	6,808	16,622	75,141	2,322
2020	40,487	124,758	40,139	117,602	7,157	34,085	109,226	8,376
2021	31,573	156,331	31,721	149,323	7,008	33,809	143,034	6,289
2022	35,391	191,722	27,034	176,357	15,365	25,260	168,294	8,063
2023	20,242	211,964	28,537	204,894	7,070	30,563	198,857	6,037
2024	42,880	254,844	43,092	247,986	6,858	39,692	238,550	9,436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3] 인구감소지역 온누리상품권 회수 현황

(단위: 억원)

광역시	기초	회수금액	광역시	기초	회수금액
부산	동구	441.4	전북	정읍시	88.6
부산	서구	419.2	전북	진안군	1.8
부산	영도구	97.6	전남	강진군	16.7
대구	군위군	1.2	전남	고흥군	7.9
대구	남구	527.1	전남	곡성군	10.2
대구	서구	683.8	전남	구례군	5.2
인천	강화군	12.4	전남	담양군	3.3
인천	옹진군	1.0	전남	보성군	13.6
경기	가평군	8.7	전남	신안군	0.0
경기	연천군	1.6	전남	영광군	10.6
강원	고성군	0.2	전남	영암군	2.2
강원	삼척시	8.9	전남	완도군	1.3
강원	양구군	0.9	전남	장성군	1.1
강원	양양군	5.1	전남	장흥군	14.8
강원	영월군	7.0	전남	진도군	0.5
강원	정선군	27.3	전남	함평군	1.5
강원	철원군	4.7	전남	해남군	16.5
강원	태백시	39.9	전남	화순군	7.9
강원	평창군	6.1	경북	고령군	70.2
강원	홍천군	9.1	경북	문경시	68.2
강원	화천군	8.3	경북	봉화군	4.9
강원	횡성군	6.5	경북	상주시	16.8
충북	괴산군	6.8	경북	성주군	8.2
충북	단양군	11.4	경북	안동시	92.0
충북	보은군	3.9	경북	영덕군	12.0
충북	영동군	7.9	경북	영양군	2.9
충북	옥천군	1.1	경북	영주시	79.7
충북	제천시	31.1	경북	영천시	83.1
충남	공주시	45.1	경북	울릉군	—
충남	금산군	44.0	경북	울진군	32.1
충남	논산시	65.7	경북	의성군	17.3
충남	보령시	54.3	경북	청도군	3.7
충남	부여군	5.4	경북	청송군	14.4
충남	서천군	20.3	경남	거창군	9.0
충남	예산군	11.9	경남	고성군	22.5
충남	청양군	6.3	경남	남해군	25.8
충남	태안군	29.1	경남	밀양시	12.8
전북	고창군	4.8	경남	산청군	1.0
전북	김제시	8.3	경남	의령군	2.8
전북	남원시	31.6	경남	창녕군	2.0
전북	무주군	7.4	경남	하동군	8.2
전북	부안군	33.6	경남	함안군	8.2
전북	순창군	1.8	경남	함양군	5.4
전북	임실군	20.5	경남	합천군	26.4
전북	장수군	1.7	총 합계		3,605.3

주: 2024.1.1.~12.31. 회수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4] 인구감소지역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현황

(단위: 개)

광역시	기초	가맹점 수	광역시	기초	가맹점 수
부산	동구	3,178	전북	정읍시	740
부산	서구	802	전북	진안군	69
부산	영도구	403	전남	강진군	221
대구	군위군	58	전남	고흥군	344
대구	남구	902	전남	곡성군	131
대구	서구	852	전남	구례군	227
인천	강화군	337	전남	담양군	—
인천	옹진군	—	전남	보성군	224
경기	가평군	319	전남	신안군	4
경기	연천군	208	전남	영광군	205
강원	고성군	134	전남	영암군	129
강원	삼척시	242	전남	완도군	154
강원	양구군	55	전남	장성군	150
강원	양양군	66	전남	장흥군	176
강원	영월군	270	전남	진도군	23
강원	정선군	393	전남	함평군	46
강원	철원군	257	전남	해남군	74
강원	태백시	307	전남	화순군	131
강원	평창군	270	경북	고령군	69
강원	홍천군	305	경북	문경시	767
강원	화천군	141	경북	봉화군	344
강원	횡성군	121	경북	상주시	521
충북	괴산군	305	경북	성주군	44
충북	단양군	167	경북	안동시	984
충북	보은군	216	경북	영덕군	228
충북	영동군	—	경북	영양군	70
충북	옥천군	72	경북	영주시	926
충북	제천시	806	경북	영천시	263
충남	공주시	147	경북	울릉군	—
충남	금산군	710	경북	울진군	406
충남	논산시	561	경북	의성군	231
충남	보령시	648	경북	청도군	118
충남	부여군	183	경북	청송군	111
충남	서천군	374	경남	거창군	261
충남	예산군	140	경남	고성군	263
충남	청양군	67	경남	남해군	99
충남	태안군	350	경남	밀양시	297
전북	고창군	80	경남	산청군	139
전북	김제시	119	경남	의령군	94
전북	남원시	228	경남	창녕군	74
전북	무주군	77	경남	하동군	241
전북	부안군	177	경남	함안군	113
전북	순창군	153	경남	함양군	141
전북	임실군	213	경남	합천군	187
전북	장수군	70	총 합계		25,522

주: 2024.12.31.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참고자료 5] 2025년 온누리상품권 발행·운영 예산 산출 근거

구분	종류	발행계획액 (A)	발행·운영 수수료(B)	할인보전율 (C)	2025년 예산 [A×(B+C)]
비할인	지류	0.8조원	2.8%	0	22,400백만원
할인	지류	0.9조원	2.8%	5%	70,200백만원
	디지털	2.3조원	0.58%	5%	128,340백만원
	디지털	1.5조원	0.58%	10%	158,700백만원
기타운영비					11,108백만원
합계					390,748백만원

주: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시장상권경영혁신지원(4154-304)-온누리상품권 발행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6] 산림청 소관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

(단위: 백만원)

인구감소지역	산림조합명	점포 사업유형	점포명	2023년 매출액
합계 (40)	40개 조합	-	41개 점포	36,841
경기(2)	가평	산지유통센터	가평로컬푸드직매장	213
	강화	조합특화사업	임산물가공판매장	631
강원(6)	홍천	산지유통센터	임산물산지유통센터	1,598
	정선	산지유통센터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277
	철원	유통시설	꽃감가공판매장	137
	화천	유통시설	로컬푸드직매장	109
	양구	조합특화사업	DMZ두드림센터 임산물판매장	1,014
	삼척	조합특화사업	임산물유통판매장	493
충북(3)	보은	조합특화사업	보은대추판매장	705
	옥천	조합특화사업	묘목 종합유통센터	603
	괴산	조합특화사업	임산물 종합유통센터	877
충남(4)	공주	유통시설	공주알밤유통센터	250
	부여	유통시설	임산물산지유통센터	4,025
	보령	임산물직매장	산림마트	2,949
		조합특화사업	임산물판매장	3,049
	청양	조합특화사업	임산물유통센터	2,509
전북(6)	진안	산지유통센터	임산물유통센터	248
	무주	조합특화사업	머루와인체험판매장	104
	무주	유통시설	임산물직매장	175
	임실	조합특화사업	임산물판매센터	1,180
	정읍	산지유통센터	임산물유통센터	5,108
	고창	유통시설	임산물로컬푸드	126
전남(8)	곡성	조합특화사업	산림마트	3,736
	구례	산지유통센터	지리산림마트	563
	보성	임산물직매장	임산물직매장	5
	해남	조합특화사업	조경수 생산 및 산림체험장	347
	장성	유통시설	임산물직매장	10
	완도	유통시설	임산물직매장	50
	진도	조합특화사업	추모공원	136
	신안	조합특화사업	조경수 생산 홍보 판매장	768
경북(7)	영덕	조합특화사업	임산물유통센터	381
	상주	산지유통센터	산지종합유통센터	218
	문경	조합특화사업	산채생산 및 유통센터	398
	봉화	유통시설	산림마트	419
	봉화	조합특화사업	장례식장	813
	울진	유통시설	명품송이주판매장	348
	울릉	조합특화사업	울릉특산임산물유통센터	138
경남(4)	의령	유통시설	임산물판매장	4
	하동	산지종합센터	산지종합유통센터	1,343
	함양	산지종합센터	산림조합유통센터	770
	고성	임산물직매장	직매장	20

주: 1. 유통 품목은 먹는 임산물(밤, 대추 등), 조경수, 묘목, 자재 등이며, 임산물 외 영업 품목으로는 장례식장, 가공시설 등이 있음

2. 2023년 결산 기준(2024년 매출액 미집계)

자료: 산림청

[참고자료 7] 기획재정부 소관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

(단위: 억원)

구분	조합명		소재지	매출액
인구감소지역	1	북부	횡성군	1.8
	2	중앙	괴산군	1.1
	3	제천	제천시	1.3
	4	충남	예산군	1.4
	5	전북	임실군	1.8
	6	정읍	정읍시	1.3
	7	광주	영광군	0.6
	8	전남	영암군	1.4
	9	경북	청송군	7.7
	10	안동	안동시	1.1
	11	경상	상주시	0.8
	소계			20.3
非인구감소지역	12	청주	청주시	2.4
	13	충부	천안시	3.4
	14	충주	충주시	1.1
	15	영남	예천군	0.6
	소계			70.5
합계			27.8	

주: 2023년 결산 기준(2024년 결산 미결)

자료: 농업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참고자료 8]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생산자단체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평균 매출액(출하액)
영농조합법인	3,131	2,094
농업회사법인	1,211	
조합공동사업법인	71	16,217
사회적협동조합	7	(알 수 없음)
합계	4,420	—

- 주: 1. 각 법인 및 조합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로, 세부적인 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 범위」(농림축산식품부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음
2.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 매출액 현황과,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점포 보유 및 운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3. 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자조금단체도 생산자단체에 포함되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함
4.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2022년 농업법인조사 결과를,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2024.12.31.을 기준으로 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참고자료 9] 해양수산부 소관 생산자단체 관련 운영 현황

(단위: 개소, 백만원)

구분	인구감소지역 내 소재	매출액
수산업협동조합(직매장)	9	12,128
강원 삼척시	1	1,138
강원 양양시	2	642
강원 고성군	1	35
경남 남해군	1	666
전북 고창군	1	1,697
전남 영암군	1	6,088
전남 신안군	1	1,650
충남 서천군	1	212
영어조합법인	515	(알 수 없음)
어업회사법인	213	(알 수 없음)
합계	737	—

- 주: 1. 수협직매장의 경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산자단체로, 점포 보유 및 운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2. 영어조합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호의 생산자단체 요건(자본금 1억원 이상 등)을 적용하지 않고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법인 전체의 현황을 산출하였으며, 각 법인의 매출액 및 점포 보유·운영 여부는 확인할 수 없음
3. 위 조합 및 법인 외에 자조금단체 및 협동조합 등도 생산자단체에 포함되나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없어 제외함
4. 2023.12.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